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24개월 이하 영아인 자녀의 회의장 출입 허용〉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48호)

2024. 10.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용혜인 · 김남근 · 김남희 · 박지혜 · 서왕진 · 송재봉
염태영 · 이수진 · 정춘생 · 정혜경 · 조 국 · 한창민
황명선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4. 9. 10.

3. 회 부 일 : 2024. 9. 11.

※ 의안번호 : 384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 · 국무총리 ·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51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2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생략) <신 설>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

현행법 제151조는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를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¹⁾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사람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이 조에서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내규」 제2조)

- ① 본회의에 종사하는 의사·의안·속기·경위직원
- ② 상정의안과 관련있는 위원회 전문위원
- ③ 상정의안과 관련있는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회공무원
- ④ 교섭단체별로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본회의장 연락요원 2인
- ⑤ 기타 국회사무총장이 허가하는 자

2) 참고로, 제20대국회에서 신보라의원이 2019년 3월 28일 국회법 제151조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자녀 동반 출입의 허가를 요청한 사례가 있음. 이에 대하여 당시 국회의장은 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는 점, ②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 안 된다는 점, ③ 신보라 의원이 2018년 9월에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자녀의 본회의장 동반 출입을 불허하였음 (국회 대변인실 보도자료(2019.4.4.), 문희상 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에 대한 입장 통보)

개정안은 의원이 생후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를 동반하여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회가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은 의원과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생후 24개월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모성보호 및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애착 형성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회의장 내 질서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연령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외국 의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 의회의 경우 2016년 「상원의사규칙」의 개정을 통해 의원이 돌보는 영아에 대하여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상원의 경우 2018년 4월, 의원의 표결권 행사와 모유 수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1년 미만의 영아에 대하여 의원과 함께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³⁾.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의회, 유럽 의회, 뉴질랜드 의회, 아이슬란드 의회 등도 가족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의원들이 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14

3) 「가족친화적 국회를 위한 과제: 여성의원원의 출산휴가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8.10.16.